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입주자모집공고
(조합원 자격상실세대 2회차)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입주자모집 관련 안내사항

■ 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자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승인일(2020.07.13.) 완료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9세대를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공동주택으로 1회차 117세대(입주자 모집공고 2021.02.09.)는 공급완료 되었으며, 금회 50세대를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50세대는 공급시기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1회차 공급한 117세대(입주자 모집공고 2021.02.09.)와 신청자격요건 등이 상이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금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1회차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1425호(2021.01.29.)시, 책정된 가격이 적용되었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을 반드시 해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발코니 비확장, 추가선택품목 추가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지정 기간 내 당첨된 세대를 필히 방문하시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사항**

- 더샵 송도마리나베이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으로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을 운영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 상담전화(☎ 032-859-0195)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 및 통화량이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안내와 관련 한 전화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를 발급받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자격요건 및 상품(단위세대 평면, 마감자재 리스트 등)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당첨자 방문 시, 준수사항**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예비대상자 포함)만 당첨자 세대 방문 및 공급계약 체결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입장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를 통해 방문예약 시스템 운영 예정으로 해당 일자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세대 방문은 해당일(2024년 07월 19일(금)~22(월)** 외 방문이 불가하오니, 필히 방문하시어 각 세대별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은 당첨자 본인(필수) 및 동반자 1인(당첨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포함 최대 2인만 입장이 가능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대리인 위임 시, 당첨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만 가능하며, 노약자 및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방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세대방문은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방문 가능인원 축소 운영 및 일정 등 관람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분양가상한제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미적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택지유형
없음	6개월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매 가능	없음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당첨자대상 당첨세대 개방)	계약체결
일정	2024.06.27.(목)	2024.07.08.(월)	2024.07.09.(화)	2024.07.10.(수)	2024.07.17.(수)	2024.07.19.(금)~2024.07.22.(월)	2024.07.29.(월)~2024.07.31.(수)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27.(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대상 당첨세대 개방)	계약체결
일 정	2024.07.08.(월)	2024.07.09.(화)	2024.07.10.(수)	2024.07.17.(수)	2024.07.19.(금)~2024.07.22.(월)	2024.07.29.(월)~2024.07.3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당사 분양사무실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 당사 분양사무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근린생활시설#4.(116동 앞 위치)** ※ 당첨세대 개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당사 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대상 서류접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특별/일반공급 및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동·호수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계약서 또한「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2회차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발표일(2024.07.17.(수))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 별 공 급	일 반 공 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2169호(2024.06.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38층 25개동 총 3,100세대 中** 조합원 자격상실분 50세대 일반공급
[특별공급 18세대(일반[기관추천] 3세대, 경제자유구역 3세대, 다자녀가구 3세대, 신혼부부 6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0년 07월 13일 사용승인완료 되었으므로 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2024.10.28.)**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261	01	074.9894B	74B	74.9894	24.2834	99.2728	38.6908	137.9635	51.6868	6	-	-	-	1	-	-	1	5
	02	084.9738A	84A	84.9738	27.1040	112.0778	43.8422	155.9200	58.5686	11	1	1	1	2	-	1	6	5
	03	084.9160B	84B	84.9160	26.7441	111.6601	43.8124	155.4725	58.5287	14	1	1	1	2	1	1	7	7
	04	084.9766C	84C	84.9766	26.7258	111.7024	43.8436	155.5460	58.5705	8	1	1	1	1	-	-	4	4
	05	084.2262D	84D	84.2262	27.2773	111.5035	43.4564	154.9599	58.0533	5	-	-	-	-	-	-	-	5
	06	084.2020E	84E	84.2020	27.7446	111.9466	43.4440	155.3906	58.0366	2	-	-	-	-	-	-	-	2
	07	084.4546F	84F	84.4546	27.8407	112.2953	43.5743	155.8696	58.2107	2	-	-	-	-	-	-	-	2
	08	084.7583G	84G	84.7583	27.2006	111.9589	43.7310	155.6899	58.4200	2	-	-	-	-	-	-	-	2
합 계										50	3	3	3	6	1	2	18	32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공동주택(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해당동·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4.10.28까지
074.9894B	74B	6	101,103,104동 1,2호	11,14,18층	3	226,520,000	406,480,000	633,000,000	63,300,000	569,700,000
				21,24,26층	3	226,520,000	413,480,000	640,000,000	64,000,000	576,000,000
084.9738A	84A	11	114,117,121,122동 1호	8층	1	261,581,000	475,419,000	737,000,000	73,700,000	663,300,000
				13,16층	2	261,581,000	490,419,000	752,000,000	75,200,000	676,800,000
				21,24,28층	4	261,581,000	497,419,000	759,000,000	75,900,000	683,100,000
				35층	1	261,581,000	512,419,000	774,000,000	77,400,000	696,600,000
			114,116,117동 4호	16층	1	261,581,000	505,419,000	767,000,000	76,700,000	690,300,000
				21,27층	2	261,581,000	513,419,000	775,000,000	77,500,000	697,500,000
084.9160B	84B	14	113,116,117,120,121,123동 2호	11,14층	2	255,527,000	485,473,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22,27,29층	3	255,527,000	492,473,000	748,000,000	74,800,000	673,200,000
				32,33,38층	3	255,527,000	507,473,000	763,000,000	76,300,000	686,700,000
			112,116,120,123동 3호	2층	1	255,527,000	444,473,000	700,000,000	70,000,000	630,000,000
				17,19층	2	255,527,000	500,473,000	756,000,000	75,600,000	680,400,000
				21,22층	2	255,527,000	508,473,000	764,000,000	76,400,000	687,600,000
				31층	1	255,527,000	523,473,000	779,000,000	77,900,000	701,100,000
084.9766C	84C	8	118,119동 4호	7층	1	250,270,000	495,730,000	746,000,000	74,600,000	671,400,000
				29층	1	250,270,000	518,730,000	769,000,000	76,900,000	692,100,000
			106,107,108,109동 4호	5,9층	2	250,270,000	443,730,000	694,000,000	69,400,000	624,600,000
				14층	1	250,270,000	458,730,000	709,000,000	70,900,000	638,100,000
				21,23층	2	250,270,000	465,730,000	716,000,000	71,600,000	644,400,000
				35층	1	250,270,000	480,730,000	731,000,000	73,100,000	657,900,000
084.2262D	84D	5	105,118동 3호	3층	1	242,249,000	446,751,000	689,000,000	68,900,000	620,100,000
				22,23층	2	242,249,000	498,751,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32층	1	242,249,000	513,751,000	756,000,000	75,600,000	680,400,000
			106동 3호	30층	1	242,249,000	483,751,000	726,000,000	72,600,000	653,400,000
084.2020E	84E	2	119동 2호	5층	1	263,657,000	446,343,000	710,000,000	71,000,000	639,000,000
			106동 2호	30층	1	263,657,000	446,343,000	710,000,000	71,000,000	639,000,000
084.4546F	84F	2	108동 1호	2층	1	269,809,000	386,191,000	656,000,000	65,600,000	590,400,000
			111동 1호	21층	1	269,809,000	487,191,000	757,000,000	75,700,000	681,300,000
084.7583G	84G	2	125동 3호	8층	1	245,635,000	468,365,000	714,000,000	71,400,000	642,600,000
				14층	1	245,635,000	483,365,000	729,000,000	72,900,000	656,1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됨.
-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완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완료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공급세대별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적용사항 및 품목별 적용되는 총 금액은 본 입주자모집공 IX.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내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변경 및 추가선택은 불가하고 공급계약 체결 외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거부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잔금납부기한(2024.10.28.) 내 완납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74B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이상 복무군인	-	-	-	1	1
	중소기업근로자	-	1	-	-	1
	장애인 (인천광역시)	-	-	1	-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1	1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	1	1	3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1	2	2	1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1	-	2
합 계		1	6	7	4	1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Ⅳ 특별공급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3 참조)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3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3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IV-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3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Ⅳ-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6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선정방법

■ **①소득구분**

단 계	소득구분	내 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IV-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1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 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9%(민간택지) 범위: 2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초과 주택형 공급으로 단독세대(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3억3,100만원**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물+토지)	이하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인천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당 사업지 적용사항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 주택형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Ⅵ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17.(수) ~ 2024.07.2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7.17.(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정 및 당첨자 서류제출장소**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특별/일반공급)	**2024.07.19.(금) ~ 2024.07.22.(월)** **(4일간, 10:00~16: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근린생활시설#4. (116동 앞 위치) ※ 당첨자 외 입장불가 (동반1인 가능)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 (당사 홈페이지) - 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 방문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서류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제출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 청약신청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유형별 청약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소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이 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제1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동안 보관하며 이후, 일괄 파기처리 합니다.
- 당첨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당첨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도 대리 신청자로 판단함)
- 예비 입주자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별도로 운영하며, 일정 및 대상자는 당사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구비서류

■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필히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필수 / 대리 발급분은 접수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생략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표6]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기관추천 / 경제 자유구역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공급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료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소득 확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만19세 이상 세대원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료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공급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5]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아래 [표5]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소득 등 확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통산 5개년도 서류 ※ 아래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공급신청자 본인)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바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료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필히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상세 발급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표2>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구비서류

■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필히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일반공급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필수 / 대리 발급분은 접수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 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표6]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필히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대리인 발급용 절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상세 발급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서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직인날인 필수)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세청홈텍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미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② [국민연금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과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③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당해회사의 간이지급명세표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해당자격요건 갖출 시, 해당세대 전체 기준소득 이하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필수)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 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당사 분양사무실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직인날인 필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회사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 외 공급 신청자의 적격 여부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③ 해당직장/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사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표5>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행복복지센터 ③ 서울특별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행정복지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6>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간지정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 불가능 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원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급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공급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이 적용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합니다.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7.29.(월) ~ 2024.07.31.(수)** **(3일간, 10:00~16: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근린생활시설#4. (116동 앞 위치) ※ 당첨자 외 입장불가 (동반1인 가능)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접수, 추첨 및 계약일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 계약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및 부적격 소명자료 일체 (사전 서류접수 제출자는 제외)
	○		계약금 입금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입금증(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분양사무실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한함)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기간에 제출한 분께서는 제외합니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도장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위임장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기준이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한에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필히 방문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바람(세대주, 주택소유, 분리세대 등 확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55-0086-9249-03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분양대금의 납부기한은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잔금은 2024.10.28.(월)까지입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당사에서는 별도 대출 지원 및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며, 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대출은행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적용사항 및 비용

■ 금회 공급하는 50세대의 기 시공된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적용사항으로 사용승인 완료 후,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을 공급계약 체결 외 별도의 추가 계약이 필요하며 미 체결 시,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단위: 원 / 부가가치세포함)

동	호수	타입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폴리싱타일	수납강화	인덕션쿡탑	엔지니어드 스톤		총비용
									주방상판	주방벽체	
101	2402	74B	13,350,000	5,397,000				790,000	600,000		20,137,000
103	1102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3	1401	74B	13,350,000	2,077,000				790,000			16,217,000
103	1802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103	2102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4	2601	74B	13,350,000	3,151,000							16,501,000
105	2203	84D	10,450,000	5,461,000				790,000			16,701,000
105	23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6	9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06	3002	84E	12,130,000	5,504,000		2,428,000					20,062,000
106	30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6	3504	84C	13,730,000	4,790,000							18,520,000
107	5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08	201	84F	12,760,000	5,438,000							18,198,000

108	1404	84C	13,730,000	5,754,000				790,000	920,000	1,600,000	22,794,000
109	2104	84C	13,730,000	4,790,000			2,233,000				20,753,000
109	2304	84C	13,730,000	5,754,000				790,000			20,274,000
111	2101	84F	12,760,000	5,438,000							18,198,000
112	1903	84B	13,440,000	5,403,000		2,787,000					21,630,000
112	2103	84B	13,440,000	5,403,000		2,307,000					21,150,000
113	3302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14	1601	84A	13,630,000	5,672,000		2,373,000	698,000				22,373,000
114	2704	84A	13,630,000	3,565,000			698,000				17,893,000
114	28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4	35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6	1102	84B	13,440,000	3,412,000	4,600,000	2,787,000		790,000			25,029,000
116	1604	84A	13,630,000	4,837,000							18,467,000
116	2203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17	13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698,000				24,600,000
117	2101	84A	13,630,000	4,837,000							18,467,000
117	2104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7	2801	84A	13,630,000	4,837,000							18,467,000
117	3202	84B	13,440,000	5,403,000		2,787,000					21,630,000
118	3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18	29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18	3203	84D	10,450,000	1,795,000							12,245,000
119	502	84E	12,130,000	2,325,000				790,000	720,000		15,965,000
119	704	84C	13,730,000	4,790,000							18,520,000
120	1703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20	3103	84B	13,440,000	4,601,000				790,000			18,831,000
120	3802	84B	13,440,000	3,412,000							16,852,000
121	2202	84B	13,440,000	5,403,000		2,787,000					21,630,000
121	24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790,000			20,790,000
121	2702	84B	13,440,000	5,403,000	4,600,000	2,787,000					26,230,000
121	2902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22	801	84A	13,630,000	2,242,000				790,000			16,662,000
123	203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23	1402	84B	13,440,000	2,058,000			1,675,000				17,173,000
125	803	84G	16,560,000	2,137,000							18,697,000
125	1403	84G	16,560,000	2,137,000		2,704,000					21,401,000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2024.10.28까지

74B	13,350,000	1,335,000	12,015,000
84A	13,630,000	1,363,000	12,267,000
84B	13,440,000	1,344,000	12,096,000
84C	13,730,000	1,373,000	12,357,000
84D	10,450,000	1,045,000	9,405,000
84E	12,130,000	1,213,000	10,917,000
84F	12,760,000	1,276,000	11,484,000
84G	16,560,000	1,656,000	14,904,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농협은행	355-0086-9249-03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발코니 확장이 기 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발코니 확장공사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지 않은 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상기 확장비용은 발코니샷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 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선택1 (거실)	선택2 (거실+안방)	선택3 (거실+안방+침실2)	선택4 (거실+안방+침실1+침실2)	비 고
74B	2,077,000	3,151,000	4,427,000	5,397,000	삼성전자 무풍시스템에어컨 (무선리모컨 제어방식)
84A	2,242,000	3,565,000	4,837,000	5,672,000	
84B	2,058,000	3,412,000	4,601,000	5,403,000	
84C	2,068,000	3,614,000	4,790,000	5,754,000	
84D	1,795,000	3,201,000	4,510,000	5,461,000	
84E	2,325,000	3,433,000	4,690,000	5,504,000	

84F	1,793,000	3,197,000	4,523,000	5,438,000
84G	2,137,000	3,460,000	4,519,000	5,293,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시스템에어컨 옵션이 기 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금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이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2) 가전 제품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모델명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RS674CHQFSR	삼성전자	4,600,000	-
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NZ63J3300CK	삼성전자	790,000	-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빌트인 냉장고 옵션이 기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빌트인 냉장고 설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빌트인 냉장고 옵션 계약이 불가함.
-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이 기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3) 바닥마감재/수납공간 강화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84A			84B			84C			84D	84E	84F	84G	비고
알파룸 벽체 / 안방수납강화 (84E만 해당)	유지	트임	슬라이딩 도어	유지	트임	알파룸+ 팬트리	유지	트임	팬트리+ 수납장	-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	-	-
	-	-	698,000	-	-	1,675,000	-	-	2,233,000	-	769,000	-	-	
폴리싱타일 (거실+주방)	2,373,000	2,660,000		2,307,000	2,787,000	2,378,000	2,318,000	2,754,000	2,621,000	2,152,000	2,428,000	2,262,000	2,704,000	-

- 바닥재관련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바닥재관련 옵션이 기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바닥타일 옵션은 주방+거실+복도+알파공간에 시공됨.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바닥재관련 옵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바닥재관련 옵션 계약이 불가함.
- 수납공간강화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수납공간강화 옵션이 기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수납공간강화 옵션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4) 주방가구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비고
주방 상판	600,000	730,000	760,000	920,000	640,000	720,000	770,000	910,000	-
주방 벽체	1,490,000	1,630,000	1,400,000	1,600,000	1,400,000	1,310,000	1,430,000	1,490,000	-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옵션이 기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설치공사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비용(부가세포함)은 상기 표의 해당 금액으로, 주방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이 기 적용된 세대의 경우 상기 표의 해당 금액이 추가 발생함.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설치공사 변경 및 취소, 추가적인 옵션 계약이 불가함.

■ 추가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옵션	농협은행	355-0086-9249-03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5)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 현재 상태의 각 세대에 적용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잔금 납부일(2024.10.28.까지)과 동일한 기일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해야 함.
-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옵션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	계약시	**2024.10.28.까지**

(6) 추가선택 옵션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미포함되어 있어, 공급 세대별 기적용된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분양계약자가 추가 납부해야 함.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은 2020년 07월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현재 세대의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기적용된 추가선택품목 옵션 철회 및 추가적인 품목선택 계약이 불가함.

X 참고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Ⅺ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잔금 납부 완료 후, 2024년 8월 12일부터 입주 가능(잔금 납부기한은 2024.10.28.까지임)**

• 입주지정기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본 아파트는 2020년 7월 13일 사용승인 완료 후,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급계약체결 이전 1회에 한하여 당첨세대 방문을 실시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호**

• 지하주차장 주차장 차로의 폭은 6.4~7.2m, 진입로 높이는 2.7m로 설계되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출입가능한 높이는 2.3m로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계획은 지하주차대수 4,160대이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본 아파트는 2020년 7월 13일 사용승인 완료 후,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 승인일(2020.07.13.) 완료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했던 주택이며, 공실 상태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분양이므로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49조 제2항 및「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당첨자는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또한 당첨자 본인이 당첨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49조 제2항 및「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사업주체측에서 하자의 범위를 확인하여 세대 내부하자 사전점검 보고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 본 아파트를 계약체결하시는 분들은 입주할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신 후, 입주 전 하자 점검을 하시고 발견 시, 사업주체인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에게 하자보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공급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할 경우 입주일부터,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자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구분	평균열관류율 기준(W/m²K)			실제 적용 열관류율	판정근거
벽체 및 창호 성능	측벽적용		0.20 이하	0.158 이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함
	외벽	직접	0.25 이하	0.208 이하	
		간접	0.32 이하	0.271 이하	
	창호	직접	1.20 이하	0.987 이하	
		간접	2.10 이하	1.549 이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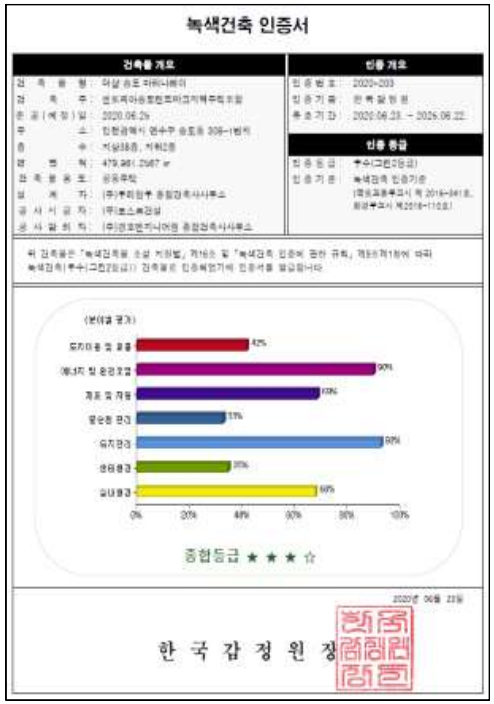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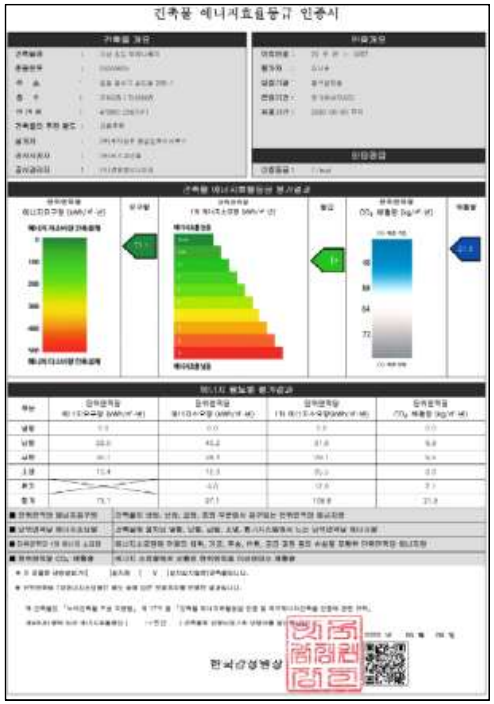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 사 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8,897,100,900	1,413,936,000	1,173,219,300	608,780,7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명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사업자등록번호	205-82-81695	506-81-02280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E동 3층 4호 (송도동, 송도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 **분양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4. (116동 앞 위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 **분양문의 : 032-859-0195**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 부탁드리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시합니다.**